

능곡우성지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37번지 일원의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0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. 12. 29.

안 양 시 장

1.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, 위치 및 면적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신규	능곡우성지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37번지 일원	-	증) 51,256.3	51,256.3	-

2.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현황

도시관리 계획사항	용도지역			용도지구		도시계획시설		기 타	
						종 류	규 모	종 류	규 모
	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			-		도로	소로 3개노선 (2,759.4㎡)	-	-

토지 현황	구 분	계 ^{주1)}	사유지		국·공유지(관리청별)						비 고
					소계		국유지		안양시		
	면 적(㎡)	51,256.3	42,851.0	8,405.3		1,039.0		7,366.3		-	
	필지수(개)	203	160	43		12		31		-	

건축물 현황	구 분	계	허가유무		용도별 허가유무						비 고
			유허가	무허가	주거용			비주거용			
					소계	유허가	무허가	소계	유허가	무허가	
	동 수	100	100	-	91	91	-	9	9	-	-
	호 수	218	218	-	209	209	-	9	9	-	-

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	거주가구 ^{주2)}			거주민구 ^{주3)}			권리자(토지등소유자)						
	계	가옥주	세입자	계	가옥주	세입자	계	토지· 건축물 소유자 ^{주4)}	토지 소유자 ^{주5)}	건축물 소유자	지상 권자		
908	366	542	2,043	824	1,219	796	757	35	4	-			

주1) 구역면적은 CAD 구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, 향후 실시하는 측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주2) 거주가구: 건축물대상 등록된 호/가구/세대를 기준으로 가구수 산출

주3) 거주민구 : 안양시 구/동별 인구현황 통계자료(2025.11.)를 기준으로 안양9동 세대상 인구수(2.25인/세대)를 적용하여 산출

주4) 토지·건축물소유자 : 안양시 포함

주5) 토지소유자 : 국토교통부, 환경부, 농림축산부, 기획재정부, 안양시에 대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 포함

3. 법 제10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예정시기

○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·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

4.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

구 분	내 용	비 고
사업시행자 명칭	안양도시공사	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
소재지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(비산동)	
대표자 성명	안양도시공사 사장 김경수	
사업시행 방법	관리처분방식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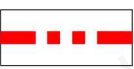
※ 사업시행자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등에 따라 안양도시공사 + 시공사(공동사업시행자)지정 예정

5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공람장소 비치)

능곡우성지역
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

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

범례

 구역계

Scale 1:2,000

